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9. February _ Vol. 125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CESCO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식품안전 주요 NEWS

2018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17개소 적발!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대형 위반업체 적발실적 증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0천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

2017년 대비 단속 연인원 2.5% 증가한 52천 여명을 투입하여 조사업체를 21.6% 확대 단속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38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0.9%(4.3%) 감소하였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을 적발하였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48%)을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 판매 · 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 · TV · 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2017년 13위에서 2018년은 5위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 · 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 · 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 · 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월 28일)

식품안전 주요 NEWS

경기도, 설 대목 노려 부정·불량식품 만들어 판 76개 업소 적발

-유통기한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품 생산하여 판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76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밖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다수의 업체가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처분	벌칙
제조일자, 유통기한 허위 표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제품 폐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미신고 영업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출처 : 경기도청, 1월 31일)

정책 / 법령 정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미역귀가 포함된 제품의 중금속 안전관리를 위해 미역귀에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고자 관련 행정규칙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2. 미역귀를 포함하도록 미역의 납 및 카드뮴 기준 개정
3.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4.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등 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31일)

세스코 식품안전감사 서비스

[P1] 식품위생진단
"약속된 기준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

[P2] 식품안전진단
"실행해야 할 기준이 적정하고 실행이 양호한지" 평가&진단

내 사업장 식품안전 체계의 새로운 변화!!

고객 니즈에 맞춘 식품안전감사 제공
•업종 특성, 글로벌 위생관리기준 접목
•HACCP컨설팅 know-how 접목
•Data 기반의 객관적 자료, 문제 발생 사전예방 가능

해충방제+Food 복합서비스로 시너지 효과
•시설+설비 2개 관점 진단 ▶ 이물 관리 특화
▶ 이물 클레임 예방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도 이물 발견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19.7.16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신고 권한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고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식품위생법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한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15일)

식약처 수입식품 관리시스템, 지능형으로 진화한다

- 수입자 자가진단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체계를 혁신하고 수입식품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 수집・ 분석 자동화 ▲수입자에게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위생증명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등이다. 또한 영업자가 해외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식품과 관련된 위해정보, 제조(수출)업소, 국가, 원재료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자가진단 서비스'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이 구축・적용되면 위해 우려 식품의 수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입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걸러냄으로써 민원편의 및 행정효율 향상은 물론, 부적합한 수입식품의 회수・폐기・반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24일)

세스코 이물분석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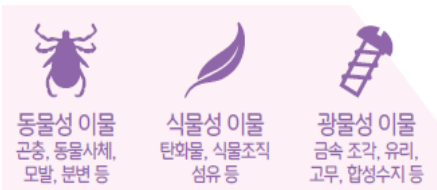

전문장비와 다양한 분석 기법 보유

국내 최대 유형별 전문 분석 장비와 기법으로 해당 이물의 명확한 실체 파악

▶ 유전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기분석
▶ 해충,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이물까지 전 영역에 대한 분석 가능

국내 최대 30여가지 유형별 전문기법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확보 하는 기관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안내

- 2년 유효기간 만료 업소 대상…전자민원창구로 갱신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 제조. 가공. 처리. 포장. 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할 수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하여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24일)

2018년 수입식품 동향 발표

- '17년 대비 금액 기준 9.7%p 증가, 30조원 돌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년 수입식품이 잠정적으로 166개국으로부터 약 274억달러, 1,855만톤이 수입되었다고 밝혔다.

'17년 대비 수입 금액은 9.7%p('17년 249억달러), 중량은 1.4%p('17년 1,829만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증가세가 주춤한 반면,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고가의 식품조리용 기구(가전)의 수입 증가세가 높아 '17년에 비해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8년도에는 166개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약 1,871개 품목이었다. '18년도 수입식품 부적합 비율은 0.2%(728,119건 중 1,483건 부적합)로 '17년(부적합률 0.19%) 대비 0.01%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수입국 166개국 중 66개국, 1,871개 품목 중 285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382건(부적합률 0.2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74건, 0.17%), 베트남(151건, 0.50%), 태국(111건, 0.33%), 이탈리아(75건, 0.25%)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기타가공품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채가공품(69건), 소스류(56건), 스테인레스기구(52건), 과자(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로는 기준 및 규격(함량, 산가 등)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보존료, 색소 등) 위반,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 기준 위반 순이었다.

식약처는 '19년도에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의 수입신고 보류, 위해정보 등에 따른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제 확대 등을 통해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31일)

세스코 해외식품 위생평가 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제4호)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 점검기준

주문자상표부착 식품 등을 수입 영업자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점검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

- 상향 평준화된 객관적 평가 시각
-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적용
- 충분한 인적, 물적, 경험적 자원 확보
- 해외식품 위생평가 대상업체 접근 편의성 확보
-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준 높은 평가기관
- 위생평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생평가원 심사 및 평가 체계 구축
- 위생평가원 윤리의식 강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 식약처, 2019년 업무계획…온라인 유통 · 판매 안전관리 강화, 희귀난치질환자치료기회 보장, 화장품 해외진출지원 등 역점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를 주제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식품 · 의약품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 · 의료기기 · 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 질병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
   2)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 · 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 집중 점검
2.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전면 개편)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1월~)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10월) 하겠습니다.
   1)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7월~) 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2) 학교급식 식중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추적관리
3. (수입식품 안전관리 철저)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하여 통관 차단,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9월)토록 하는 등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하겠습니다.
4. (어린이 · 여성 · 어르신 등 민감계층 안심 지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올해부터는 소규모 어르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의 위생과 식단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시범사업, 7월~)하겠습니다.
5. (소비자 요청정보 제공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 계란 사육환경,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농장위치, 사육환경 등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를 제공(9월~)합니다.
6. (공유경제 실현 및 일자리 확대) 식품 제조 · 가공업자가 다른 품목 제조소 시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1월~)하고, 서로 다른 영업자가 칸막이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같은 공간에서 영업(2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식약처장은 2019년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28일)

세스코 표시컨설팅 서비스

비용
잦은 법령 변경에 따른 인쇄 동판 변경 최소화 유도
이슈로 인한 불용&회수 제품 최소화

인력(역량) 관리
잦은 인력 변화에 따른 관리 역량 유지
표시 관리 인력의 업무 효율성 증대

마케팅
최소 표시사항 적용으로 마케팅포인트 면적 증가
디자인 통일성 향상

【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솔루션 제공

【 현장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현장방문, 일당 10제품

【 표시 작성 】
- 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작성 및 솔루션 제공

【Online/광고물 검증】
- 셀링포인트/체험기/댓글 등 허위.과대 광고 검증

제품 출시 처음부터 끝까지 법규 기반의 체계적인 법규 리스크 관리

⚠ 주요 단속 정보

'19년 2월 ~ 3월 점검(수거검사 포함) 일정

점검명	점검 대상	점검기간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점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7~2.20
○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점검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영유아곡류조제식, 환자용식품 등	2.18~2.22
○ 상반기 탁·약주 제조업체 점검	탁·약주 제조업체	2.18~2.22
○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점검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2.25~2.27
○ 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소 등 합동점검	학교급식 · 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 납품업체, 분식점 등 조리 · 판매업체	3.4 ~ 3.12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지도점검		3.11~3.2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 NEWS

식약처,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매뉴얼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육판매업 영업에 필요한 사항 ▲영업신고에 따른 영업자 의무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 ▲설비 운용과 제품 취급 요령 ▲참고 및 서식 등이다.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세스코 식품안전' 사이트(▶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25일)

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academy.co.kr

HACCP 정기 과정 (2/19, 3/6)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2/19, 3/21)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환급'

HACCP 팀장 과정 (2/21~22, 3/7~8)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식품 전문 교육

식품공장 해충 방어와 이물분석 (2/20)
- 식품공장 유래 주요 해충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어법 제공
- 주요 이물의 동정방법과 취약포인트 개선방안

AIB 감사를 위한 IPM 교육 (2/27)
- AIB 감사를 받는 고객사가 감사기준을 준수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해충을 관리하기 위해 IPM의 개념 및 각 해충별로 상이한 IPM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 2016. CESCO Co.,Ltd All rights reserved.

“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

연간 단속 계획

월	점 검 명	대상	점검기간
1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조리.판매	‘18.12.26 ~ 1.4
	○ 설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체	1.14 ~ 1.18
2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점검(1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2.7 ~ 2.20
	○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점검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영유아곡류조제식, 환자용식품 등	2.18 ~ 2.22
	○ 상반기 탁·약주 제조업체 점검		2.18 ~ 2.22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1차)		2.25 ~ 2.27
3	○ 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소 등 합동점검	학교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 납품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체	3.4 ~ 3.12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지도점검		3.11~3.22
	○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조리・판매업체	3.18 ~ 3.22
	○ 지하수 부적합 주류 제조업체 등 점검	수질검사 부적합 업체, 검사명령제 대상업체 등	3.25 ~ 3.29

“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

연간 단속 계획

월	점 검 명	대상	점검기간
4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	도시락,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제조.판매	4.1 ~ 4.5
	○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집단급식소(청소년수련원 시설), 김밥, 도시락제조업체 등	4.8 ~ 4.12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4.15 ~ 4.19
	○ 액란제품 제조업체 점검		4.17 ~ 4.19
	○ 가정의달(어린이날 등) 대비 제조・유통・조리업체 점검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결혼식장 등 식품접객업체,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체, 학교매점 등 조리・판매업체 등	4.15 ~ 4.26
5	○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점검		5.7 ~ 5.10
	○ 위생취약 분야 조리・판매업체 점검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야구)장 등	5.13 ~ 5.17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점검(1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5.13 ~ 5.17
	○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점검		5.13~5.31
	○ 하절기 대비 맥주(소규모 포함) 제조업체 점검		5.20 ~ 5.24
6	○ 다빈도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1차)		6.3 ~ 6.14
	○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조리・판매업체 점검		6.10 ~ 6.14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2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6.10 ~ 6.14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6.10~6.28
	○ 과실주, 일반증류주 제조업체 점검		6.17 ~ 6.21

“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

연간 단속 계획

월	점 검 명	대상	점검기간
7	○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합동 교차점검	고속도로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커피.주스 프랜차이즈 등	7.1 ~ 7.12
	○ 하절기 대비 주류 유통·판매업체 점검	직매장, 주류 도·소매업 등	7.15 ~ 7.19
	○ 프랜차이즈 원료 및 PB제품 제조업체 점검	빵류, 면류, 즉석조리식품 등	7.22 ~ 7.26
8	○ 추석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및 온라인 신선농산판매업소의 거점 물류센터 등	8.21 ~ 8.27
	○ 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소 등 합동점검	학교 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납품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체	8.29 ~ 9.6
9	○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점검		9.2 ~ 9.6
	○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교차 점검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조리・판매업체	9.23 ~ 9.27
	○ 과실주, 리큐르 제조업체 점검		9.23 ~ 9.27

“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

연간 단속 계획

월	점 검 명	대상	점검기간
10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점검(2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9.30 ~ 10.11
	○ 사회특정계층 대상 식품취급업소 점검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10.14 ~ 10.18
	○ 하반기 탁·약주 제조업체 점검		10.14 ~ 10.18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10.21 ~ 10.25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등 점검	약초시장 등의 농임산물 판매업소	10.23 ~ 10.25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3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10.28 ~ 11.1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식품 접객업체 점검		10.28 ~ 11.5
11	○ 다빈도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2차)		11.1 ~ 11.8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2차)		11.1 ~ 11.8
	○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 점검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식품제조.판매	11.11 ~ 11.15
	○ 식육포장처리업체 지도・점검		11.11~11.22
	○ 연말연시 대비 소주 제조업체 점검		11.25 ~ 11.29
12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4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12.2 ~ 12.6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빵류 등 제조・판매업체 점검	빵류(케이크), 초콜릿류 등 제조・판매업체	12.9 ~ 12.13
	○ 동절기 주류 유통·판매업체 점검	직매장, 주류 도·소매업 등	12.9 ~ 12.13